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 천년의 신라(新羅), 한국문화의 원형(源亨)!

◆ 간강과 행복을 찾는 율리(율리) 관광 최적지

"경북이 색다른 강북"으로 놀러오세요.

(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지방도921호선 유천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 상 북 도 남부건설사업소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 7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지방도921호선 유천소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50,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 업 항 : 정밀안전진단 1석

라.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복안면 반정리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합**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임이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임이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9. 18.(금) 14:00 ~ 2026. 9. 28.(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9. 28.(월) 15:00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필인통기부장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나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중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나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受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분야 해당하는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별표 5)를 따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출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전격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제결 제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격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8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장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전격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전격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격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기타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
- 용역관련 문의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송혁재(☎ 054-880-8283)
- 계약관련 문의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배다혜(☎ 054-880-8217)

2026. 9. 18.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제무관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본 전격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전격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격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전격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격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전격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전격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전격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격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전격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환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격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전격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격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각 사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제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제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제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 제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용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상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제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취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취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업제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회)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4. 03. .

발주자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일부를 범행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신하기관)의 임직원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의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직(인물) 간사 또는 조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규홍 계약상대자(확인인) 2026년 월 일 (서명 또는 인)